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

(맹진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1033

발의년월일 : 2016년 2월 18일

발 의 자: 맹진영・신언근・김기대

장우윤 • 우창윤 • 김창수

김동율 • 한명희 • 김혜련

김현아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○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, 서울시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,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・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에게 관내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정보격차 감소와 정보 화 역기능 예방을 책무로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컴퓨터와 함께 무상수리, 소프트웨어,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(안 제6조)

다. 교육감은 인터넷과 게임 중독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(안 제7조)와 사이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(안 제8조)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교육기본법」제23조와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60조의

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, 서울특별시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한편,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·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저소득층 학생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0조의 4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.
- 2. "정보화 지원 사업"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04조의2제1항제5 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 화 지원을 말한다.
- 3. "정보화 역기능"이란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, 사이버 음란물 노출 등을 말한다.
- 4. "인터넷 중독"이란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제3조제20호에서 정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 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·정신적·사회적 기 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.
- 5. "게임 중독"이란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말한다.
- 6. "사이버음란물"이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음란정보 및 「청소년 보호법」제 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.

-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되는 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,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적용 대상)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에만 적용한다.
- 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교육감은 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정보화 지원 사업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
 - 3.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컴퓨터 등의 지원)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 인용 컴퓨터(이하 "컴퓨터"라고 한다)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 다.
 - ② 제1항의 컴퓨터를 지원할 경우에는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무상수리
 - 2. 컴퓨터를 활용한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
 - 3.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
 - 4. 인터넷 통신비
- 제7조(인터넷·게임 중독의 예방·관리) 교육감은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의 예방·관리를 위하여 일일 최대 이용시간, 심야시간 이용제한 등 기술적

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의 학습 권은 24시간 보장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사이버음란물의 차단)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
 - 2.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 차단
 - 3.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, Social Network Service) 차단
 - 4. 시큐어소켓레이어(SSL, Secure Socket Layer) 프록시 사이트 및 우회 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
 - 5.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을 이용할 경우 불법·유해 사이 트 차단. 다만, 불법·유해 사이트가 아닌 경우 접속 허용
 - 6.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
- 제9조(역기능 예방 동의 등) ① 교육감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기술적 안전조치 등을 취할 경우에는 정보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역기능 예방에 관한 동의(이하 "역기능 예방 동의"라 한다)를 얻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역기능 예방 동의를 얻은 경우,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될 때에는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자동관리 시스템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지원 대상자 및 지원 컴퓨터 현황
 - 2. 제6조제2항에 의해 지원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
 - 3. 제7조 및 제8조의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
 - 4.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타 시·도 전학 보고 등의 수작업 업무 전산화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자동관리 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」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제정안 제6조 컴퓨터 등의 지원, 제7조 인터넷·게임 중독의 예방·관리, 제8조 사이버음란물의 차단, 제10조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○「초·중등교육법」제60조의 4에 해당하는 "저소득층 학생"
- ○「초・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"정보화 지원 사업"

나. 전제

- 동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개인용 컴퓨터 비용은 추계기간 중(2016~2020년) 최초 제공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컴퓨터 무상수리 비용은 추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 함
- 추계기간 동안 저소득층 학생 수(26,730명)는 변동 없다고 가정
- 2015년 저소득학생 중 컴퓨터를 기 지원 받은 867명은 추계 대상 제외
- ※ '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'사업에 따라 초1~고1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7명에게 기 컴퓨터 지원
- 컴퓨터 지원 시 정품 소프트웨어 포함
- 연간 기지원 PC 유지보수비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추산
- PC 수리비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학생수는 전체의 1%: 267명
- 연간 PC 수리비: 100천원/1대
- PC 수리비는 추계기간 중(2016~2020년) 2차년도(2017년)부터 발생 하고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
- PC 수리비 적용단가는 서울시교육청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

- 동 조례안 제6조제2항4호 인터넷 통신비에 관한 사항은 이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
 - ※ '16년 인터넷통신비 56억 4,615만원 지원 : 초·중·고 저소득층 학생(26,730명)에 대한 정보화 지원으로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
- 동 조례안 제7조 인터넷·게임 중독의 예방·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미 기 추진 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 없음
 - ※ '16년 정보통신윤리교육비 8,833만원 지원 : 정보통신윤리 의식 제고 및 지도 능력 함양,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예방 상담·교육 등
- 동 조례안 제8조에 따른 사이버음란물의 차단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 한 자료를 근거로 추계
- 동 조례안 제10조에 따른 자동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은 관련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'정보화 지원' 예산안을 근거로 추계
 - ※ 통합관리시스템: 9,600천원, 정보화지원시스템 유지보수: 연간 3,960천원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(2016~2020년)

라. 방법

○ 모든 비용은 동 조례안 제6조,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, 서울시교육청 및 전북교육청에서 제출・제 공한 자료를 토대로 합산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비용추계 결과 ≒ 329억 1.286만 원
- 5년간 329억 1,286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, <u>연평균 65억</u> 8.257만 워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합계
세입		_	-	_	-	1	-
	소계(a)	_	_	_	_	_	-
세출	정보화지원 사업비	30,673,209	559,914	559,914	559,914	559,914	32,912,865
	소계(b)	30,673,209	559,914	559,914	559,914	559,914	32,912,865
□총 비용(b-a)		30,673,209	559,914	559,914	559,914	559,914	32,912,865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 승 우

사업평가팀장 황 훈

분 석 관 원 동 아

☎02-3705-1285, e-mail(dongya1@seoul.go.kr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대상과 방법

가. 대상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60조의4(교육비지원)에 따라 초·중·고·특수학교·각 종학교·방통고·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학생(단, 만 22세 미만의 학생에 한함)
- 지원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, 형제·자매 중복 시 최 연소 학생 선정·지원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"정보화 지원 사업" 나. 방법
 - 모든 비용은 동 조례안 제6조,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, 서울시교육청 및 전북교육청에서 제 출·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합산 추계

다. 비용 추계

- 저소득층 학생 개인용 컴퓨터 등의 지원 및 수리비용에 관한 사항 : 1차년 도 총비용: 30,130,395천원, 2~5차년도 총비용 연평균: 26,700천원
 - 초·중·고 저소득층 학생 25,863명에게 개인용 컴퓨터 제공 비용(1 차년도에만 발생): 30,126,900천원
 - 1,165천 원(컴퓨터 지원단가) × 25,863명(학생) = 30,130,395천원
 - ※ 2015년도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매계획(참여협 력담당관-5075(2015.5.8.))
 - 지원단가: 1,165천원 컴퓨터: 1,030천원, 정품 SW: 135천원(한글2014, MS오피 스 2013, 포토샵 V.12)
 - ※ 초·중·고 저소득층 학생¹⁾ 26,730명 중 2015년에 컴퓨터를 기지원 받은 초1~고1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7명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
 - 컴퓨터 내구연한 동안의 무상수리(2차년도부터 발생) 비용 연평균 : 26.700천원
 - 100천 원(PC 유지보수비/연간) × 267명(학생)
 - ※ 연간 PC 수리비²¹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학생수는 전체(26,730명)의
 1%로 가정: 267명
 - 사이버음란물의 차단 비용에 관한 사항(제8조): 연간 529.254천원
 - 유해정보차단서비스 비용은 기 지원되고 있는 인터넷통신비(월 17,600원)지원에 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 추가 한다고 가정하여, 비용 추계에는 유해정보차단서비스 포함에 따른 인터넷통신비 추가비용 1.650원만을 추계 산정
 - 1.650원(사이버음란물 차단) × 26.730명(학생) × 12월= 529.254천원
 - ※〈붙임1〉'2-나. 조례안 제8조에 관련된 자료'의 경기도 교육청 「저소 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」 비용추계를 준용
 - 자동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 : 1차년도 비용: 13,560천원, 2~5차년 도 총비용 연평군: 3.960천원
 - 통합관리시스템(1차년도만 발생): 9,600천원, 정보화지원시스템 유지보

수: 330천원×12월 = 3,960천원

- ※ 서울시교육청은 자동관리 시스템 관련 사업을 했던 전례가 없기에 관련 참고자료를 구할 수 없었음. 다만, 전라북도('15.10.12제정)에서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, 전북교육청의 '2016년 정보화지원' 예산안 내역을 준용하여 추계 (〈붙임 2〉 전라북도 교육청의 '정보화 지원(통합관리시스템+정보화지원시스템 유지보수)' 예산 산출근거 준용)
- 비용 총액(합계) ≒ 32,912,865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합계
III OI		_	1	-	-	-	-
세입	소계(a)	_	-	_	_	_	_
	컴퓨터 지원 (정품소프트웨어 포함)	30,130,395	-	-	_	-	30,130,395
	기지원PC 유지보수비	_	26,700	26,700	26,700	26,700	106,800
세출	사이버음란물 차단	529,254	529,254	529,254	529,254	529,254	2,646,270
	자동관리 시스템	13,560	3,960	3,960	3,960	3,960	29,400
	소계(b)	30,673,209	559,914	559,914	559,914	559,914	32,912,865
	□총 비용(b-a)	30,673,209	559,914	559,914	559,914	559,914	32,912,865

^{1) 2013~2015}년도의 실제 지원자 수 대비 지원 대상자 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도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 호대상자 추정인원 48,600명의 55%인 26,730명

²⁾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컴퓨터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의 「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 방에 관한 조례」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작성

<붙임 1>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출 자료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」비용추계를 위한 자료

1. 자료요구 내용

- 가. 조례안 제6조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 지원 및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무상수리,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
 - 저소득층 학생 수, 컴퓨터 지원 단가, 무상수리 비용(1대당, 연간), 소프트웨어 비용
 - ※ 조례안 내용에 상당하는 '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계획'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항에 준 하여 작성
- 나. 조례안 제8조에 따른 사이버음란물의 차단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
 - 제8조 각 호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에 필요한 컴퓨터 1대당 사이버음란물 차단 비용
 - ※ 타 시도에서 "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" 에 관련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경우 참고하여 작성

2. 제출 내용

- 가. 조례안 제6조에 관련된 자료
 - 1) 저소득층 학생 수 : 26,730명
 - 2) 컴퓨터 지원 단가 : 1.030.000원(1대당)
 - 컴퓨터 사양: Core i3 4130M 3.4GHz 이상. LCD모니터 21.5인치 이상

- 근거 : 2015년도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 매계획(참여협력담당관-5075(2015.5.8.))

3) 컴퓨터 수리비용 : 100,000원(1대당)

- 근거 : 우리 교육청에서는 컴퓨터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의 「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」비용추계를 참고하 여 작성

4) 소프트웨어 비용 : 135,000원(1대당)

- 근거 : 2015년도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 매계획(참여협력담당관-5075(2015.5.8.))

나. 조례안 제8조에 관련된 자료

연번	시·도	조례 제정일	단가	근거		
	전라북도	2015.10.12.	1,600원	전라북도 교육청		
1				「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		
				및 역기능예방에 관한		
				조례」 비용추계		
2	경기도	2016.1.4.	1,650원	경기도 교육청		
				「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		
				및 역기능예방에 관한		
				조례」 비용추계		

<붙임2> 전라북도 교육청 제공 자료

45. 정보화 지원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16. 1. ~ 2016. 12.

O 사 업 비 : 5,025,445천원

- 재원별 (단위 : 천원)

자체비	국고보조금	특별교부금	지자체	기타	계
5,025,445					5,025,445

□ 사업내역 (단위 : 천원)

사 업 내 역	2016년도 예산	2015년 본예산액	2015년 최종예산액	비교증감	
가 됩 네 듹	산출내역	요구액(A)	는데선택 (B)	의 중에 선 각 -	(A)-(B)
합 계		5,025,445	5,140,960	5,140,960	△115,515
컴퓨터지원	- 1,150천원×1,035대×1회	1,190,250	1,271,425	1,271,425	△81,175
정품소프트웨어지원	- 121천원×1,035대×1회	125,235	125,235	125,235	0
기지원PC 유지보수비	- 100천원×100명×1회	10,000	0	0	10,000
인터넷사용료및정보화 역기능기술적안전조치	- 19.2천원×16,000명×12월	3,686,400	3,740,340	3,740,340	△53,940
통합관리시스템	- 9,600천원×1식	9,600	0	0	9,600
정보화지원시스템 유지보수	- 330천원×12월	3,960	3,960	3,960	0